「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3. 4. 24.(수)
행정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3년 4월 5일

다. 회부일자 : 2013년 4월 9일

라. 상정일자 : 2013년 4월 16일

(제3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국장 강호동)

가. 제안이유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기능의 이관 등 조정사항과 본청 실·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구조정 >

○ 문화관광환경국 → 문화체육관광국(안 제5조, 제11조)

○ 바이오산업국 → 바이오환경국(안 제5조, 제13조)

< 분장사무 조정 등 >

○ 경제부지사 분장사무 조정(안 제4조)

-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에 환경 관련 사무 추가

○ 체육진흥 및 체육시설 관련 사무 이관(안 제11조)

- 행정국 → 문화체육관광국

○ 건축, 공공디자인, 도시경관 관련 사무(안 제11조)

- 균형건설국 → 문화체육관광국

○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 관련 사무 신설(안 제12조)

- 균형건설국

○ 환경정책 및 수질관리 관련 사무 이관(안 제13조)

- 문화관광환경국 → 바이오환경국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관련 이관 사무 조정(안 제9조, 제13조)

-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관련 사항 삭제
- 경제자유구역 내 첨복단지 및 오송2단지 관련사무 이관 및 조정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금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설치에 따른 본청 일부기능의 이관 등 조정사항과 본청 실·국 및 사무의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 기존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조정하고,

○ 체육관련 업무를 행정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 건축·공공디자인 등 관련 사무를 균형건설국에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 환경 및 수질관련 업무를 문화관광환경국에서 바이오환경국으로,

○ 경제자유구역청 설치와 관련 이관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만, 관광분야의 발전과 연계성이 높은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 관련 사무의 문화관광환경국에서 균형건설국 이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안 제12조)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7. 수 정 안 요 지

○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 4. 16, 정지숙 의원

○ 수정이유

-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은 관광업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임.
- 충청북도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수정 하는 것임.

○ 수정 주요내용

-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존치로 수정
- 건축디자인과 명칭을 건축문화과로 수정

8. 소 수 의 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 수정이유

항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건축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국에 두고,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수정함.

2. 주요내용

○ 공항지원팀의 문화체육관광국 관광항공과 재조정에 따른 수정내용

- 제12조 균형건설국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의 신설 조항을
- 제11조 문화체육관광국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
-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부칙) 제3조제8항 중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를 삭제

○ 건축디자인과 국 이관 및 명칭변경 관련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 (부칙관련)

- 충청북도 건축조례,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충청북도 주택조례 관련 중 "건축디자인과",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 "건축문화과장"으로 개정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2조(균형건설국)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의 신설 조항을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으로 조정
제11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로 조정
제12조 제20호를 삭제, 같은 조 제21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제20호부터 27호까지로 조정
부칙 개정안 조정(다른 조례의 개정)

·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제3조제8항 중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를 삭제

· 충청북도 건축조례 관련
제3조제13항에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및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

·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관련
제3조제14항에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를 신설

· 충청북도 주택조례 관련
제3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⑮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8.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9. 관광, 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1.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12.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개정안과 같음) 10. 공항활성화 지원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11.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2.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13.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21. ~ 2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개정안과 같음) <삭 제> 20. ~ 27.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수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부 칙 제1조 ~ 제2조 (개정안과 같음)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개 정 안	수 정 안
⑧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삭 제>
⑨ ~ ⑫ (생 략)	⑨ ~ ⑫ (개정안과 같음)
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건축디자인과“를 ”건축문화과“로 한다. <신 설> 제22조제2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신 설>
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신 설> ⑮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신 설> 제9조 본문 중 “건축디자인과장”을 “건축문화과장”으로 한다. <신 설>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을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환경”으로 한다.

제5조 중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한다.

제7조제14호, 제1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8호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8.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9. 관광, 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1.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12.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12조제20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제21호부터 제3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종전 제28호)부터 제31호(종전 제3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0.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
2. 바이오밸리 조성·지원
3. 오송역세권 개발
4.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6.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7.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8.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9.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10.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5.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6.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17.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을 "문화체육관광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바이오산업국"을 "바이오환경국"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③ 충청북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명 칭	소 관 부 서	
	주관실국	부 서
일반행정 분 과	기획관리실 (정책기획관)	의회사무처,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리실, 행정국,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충북도립대학, 자치연수원, 북부출장소, 남부출장소
복지여성 분 과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보건복지국, 여성정책관, 여성발전센터
문화체육 분 과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과)	문화체육관광국, 청남대관리사업소
경제환경 분 과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통상국, 바이오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경제자유구역청
농 정 분 과	농정국 (농업정책과)	농정국, 농업기술원, 산림환경연구소, 축산위생연구소, 농산사업소, 내수면연구소
건설소방 분 과	균형건설국 (균형개발과)	균형건설국, 혁신도시관리본부, 소방본부, 각급 소방서, 도로관리사업소

④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⑤ 충청북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⑥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⑦ 충청북도립교향악단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⑧ 충청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광항공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⑨ 충청북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행정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하고,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⑪ 충청북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⑫ 충청북도청풍명월21실천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문화관광환경국장”을 “바이오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충청북도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⑭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균형건설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부지사) ① ~ ② (생략)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8. (생략)	제4조(부지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경제부지사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경제, 건설, 바이오산업, 환경**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2. 의회, 정부, 국회, 언론, 정당, 경제단체 등과의 정무적 협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를 행정적·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 8. (현행과 같음)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관광환경국**, 균형건설국, **바이오산업국**, 청원 ·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하"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단·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실, 행정국, 보건복지국, 경제통상국, 농정국, **문화체육관광국**, 균형건설국, **바이오환경국**, 청원 ·청주통합추진지원단(이하"통합추진지원단"이라 한다), 혁신도시관리본부 및 소방본부를 둔다.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생략) **14.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15.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3.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략) **5. 충북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추진 관련 사항** **6.** ~ **19.** (생략)	제9조(경제통상국) 경제통상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5.** ~ **18.** (현행과 같음)
제11조**(문화관광환경국) 문화관광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문화재지정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6.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7. 관광, 레포츠산업 육성,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8.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9.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0.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1.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2.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3.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4. 지하수 관리 및 댐주변 관리에 관한 사항 15. 폐수 배출업소 및 축산폐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3. 예술·종교단체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조정 8. 관광사업체 지도 육성 및 관광객 유치 홍보 9. 관광, 레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0.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11.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12.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생략) <신 설> 20. ~ 27. (생략) 28. 주택건설종합계획 수립 및 주거환경 개선 29. 건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육성 30. 공공디자인, 도시 경관에 관한 사항	제12조(균형건설국) 균형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공항시설 및 항공산업에 관한 사항 21. ~ 28.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제13조(바이오산업국) 바이오산업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지원 2. 바이오밸리내 국책기관, 연구소, 대학 유치 3. 바이오메디컬 시설 유치 및 건립 지원 4.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수립·추진 5. 오송1,2생명과학단지 조성·지원 6. KTX 오송역세권 개발 및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제13조(바이오환경국) 바이오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바이오산업 기획·조정 2. 바이오밸리 조성·지원 3. 오송역세권 개발 4.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 바이오산업 연구개발 지원 6. 바이오산업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7.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현 행	개 정 안
7.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8. 바이오관련 R&D 사업 발굴 및 지원 9. 바이오 인프라 활용 산연학관 협력 지원 10. 헬스산업,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1. 바이오관광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 12.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13. 바이오 네트워크 및 마케팅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8. 바이오 국제 공동연구사업 추진 9. 화장품·뷰티산업 진흥 10.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11. 자연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기후변화대책 총괄 추진에 관한 사항 12. 환경오염 피해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 13. 대기·수질·토양·소음·유독물 등의 환경시설관리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4. 물관리 종합기획 조정 및 수질관리 15. 상·하수도 종합기획 조정 16. 지하수 관리 및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운영 17. 폐수 배출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국·본부의 개편, 명칭변경과 사무분장을 할 때 중앙행정조직과 지방행정조직간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